



제1583호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훈 령

- 훈 령 제 3 8 1 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훈령 2
- 훈 령 제 3 8 2 호 남동구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16

공 고

- 공 고 제 2 4 8 5 호 장수1지구, 도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 20
- 공 고 제 2 4 8 8 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24
- 공 고 제 2 4 8 9 호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35
- 공 고 제 2 4 9 1 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1
- 공 고 제 2 4 9 3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59
- 공 고 제 2 4 9 4 호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62
- 공 고 제 2 5 0 1 호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2
- 보 건 소 공 고 제 1 2 8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113
- 보 건 소 공 고 제 1 2 9 호 2021년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15
- 보 건 소 공 고 제 1 3 0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125

고 시

- 고 시 제 2 1 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소래5호선, 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27
- 고 시 제 2 1 5 호 도시계획시설(시장: 소래어시장)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29
- 고 시 제 2 1 6 호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131
- 고 시 제 2 1 9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133
- 고 시 제 2 2 0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36
- 고 시 제 2 2 1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138
- 고 시 제 2 2 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1-6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40

회 람								
----------------	--	--	--	--	--	--	--	--

훈 령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12월 29일

남동구 훈령 제381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훈령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 각 부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763	
대변인	계		8	
	일반직	소 계	8	
		5 급	1	행정1
		6 급	3	행정3
		7 급	2	행정1, 행정·전산1
소통협력 담당관	계		9	
	일반직	소 계	9	
		5 급	1	행정1
		6 급	3	행정1,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1
		7 급	2	행정2
감사실	계		13	
	일반직	소 계	13	
		5 급	1	행정1
		6 급	5	행정3, 행정·시설1, 행정·세무·사회복지1
		7 급	7	행정6, 행정·사회복지·시설1
기 획 예산과	계		21	
	일반직	소 계	21	
		4 급	1	지방서기관1
		5 급	1	행정1
		6 급	6	행정6
		7 급	8	행정7, 전산1
일자리 정책과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 급	1	행정1
		6 급	6	행정6
		7 급	6	행정6
안 전 총괄과	계		22	
	일반직	소 계	22	
		5 급	1	행정·시설1
		6 급	4	행정·공업2, 행정·시설1, 행정·방송통신1
		7 급	6	행정2, 공업1, 시설1, 방송통신1, 공업·시설1
		8 급	7	행정1, 공업1, 시설2, 방송통신2, 행정·방재안전1
		9 급	4	행정1, 방송통신1, 행정·방재안전2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미디어 정보과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 급	1	행정1
		6 급	4	전산1, 방송통신1, 행정·전산2
		7 급	7	전산5, 방송통신2
		8 급	4	전산3, 방송통신1
9 급	1	행정1		
총무과	계		34	
	정무직	-	1	(구청장)
	일반직	소 계	29	
		2 급	1	지방이사관1
		4 급	1	지방서기관1
		5 급	1	행정1
		6 급	7	행정7
		7 급	11	행정10, 전산1
		8 급	7	행정7
		9 급	1	행정1
		소 계	4	
		5 급	1	비서실장1
		6 급	1	비서요원1
7 급	1	비서요원1		
8 급	1	비서요원1		
평 생 교육과	계		32	
	일반직	소 계	32	
		5 급	1	행정1
		6 급	7	행정5, 행정·사서2
		7 급	10	행정3, 사서3, 전산1, 시설1, 행정·사서2
		8 급	7	행정2, 사서5
9 급	7	행정1, 사서6		
문 화 관광과	계		12	
	일반직	소 계	12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2, 행정·시설2
		7 급	4	행정3, 시설1
		8 급	2	행정2
9 급	1	행정1		
체 육 진흥과	계		12	
	일반직	소 계	12	
		5 급	1	행정1
		6 급	3	행정2, 시설1
		7 급	6	행정3, 시설1, 녹지·시설2
8 급	2	행정2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민 원 봉사과	계		21	
	일반직	소 계	20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4
		7 급	6	행정5, 사무운영1
		8 급	8	행정8
		9 급	1	행정1
	연구직	6 급	1	기록연구사1
토 지 정보과	계		20	
	일반직	소 계	20	
		5 급	1	시설1
		6 급	6	시설4, 행정·시설2
		7 급	9	시설8, 행정·시설1
		8 급	2	시설2
		9 급	2	시설2
재 무과	계		29	
	일반직	소 계	29	
		4 급	1	지방서기관1
		5 급	1	행정1
		6 급	8	운전3, 기계운영1, 행정·세무2, 행정·시설2
		7 급	13	행정4, 공업2, 시설2, 방송통신1, 운전3, 행정·세무1
		8 급	6	행정4, 공업1, 시설1
세 무과	계		30	
	일반직	소 계	30	
		5 급	1	행정1
		6 급	9	세무7, 행정·세무2
		7 급	16	세무14, 행정·세무2
		8 급	4	세무3, 행정·세무1
세 입 징수과	계		36	
	일반직	소 계	36	
		5 급	1	행정1
		6 급	9	세무7, 행정·세무2
		7 급	18	세무16, 행정·세무2
		8 급	3	세무2, 행정·세무1
		9 급	5	세무4, 행정·세무1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기 업 지원과	계		13	
	일반직	소 계	13	
		5 급	1	행정·공업1
		6 급	4	행정2, 공업·시설2
		7 급	5	행정2, 공업2, 공업·시설1
		8 급	2	행정2
		9 급	1	행정1
생 활 경제과	계		19	
	일반직	소 계	19	
		5 급	1	행정1
		6 급	5	행정2, 공업1, 행정·공업1, 행정·해양수산1
		7 급	6	행정3, 행정·시설1, 행정·공업1, 시설·해양수산1
		8 급	6	행정3, 공업2, 행정·공업1
		9 급	1	공업1
농 축 수산과	계		19	
	일반직	소 계	19	
		5 급	1	행정·농업·해양수산1
		6 급	4	행정·농업1, 행정·해양수산1, 행정·농업·수위2
		7 급	9	행정1, 농업4, 수위2, 해양수산2
		8 급	5	농업3, 해양수산1, 행정·해양수산1
복 지 정책과	계		22	
	일반직	소 계	22	
		4 급	1	지방서기관1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5	행정1, 행정·사회복지4
		7 급	7	행정3, 사회복지4
		8 급	7	행정2,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2
		9 급	1	행정·사회복지1
사 회 보장과	계		37	
	일반직	소 계	37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5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7 급	13	행정6, 사회복지7
		8 급	18	행정6, 사회복지12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노 인 장애인과	계		26	
	일반직	소 계	26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6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3
		7 급	10	행정4, 사회복지3, 시설1, 행정·사회복지2
		8 급	9	행정4, 사회복지5
여 성 가족과	계		13	
	일반직	소 계	13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7 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8 급	4	행정2, 사회복지2
		9 급	1	사회복지1
아 동 복지과	계	1)	19	
	일반직	2) 소계	19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5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7 급	7	행정2, 사회복지4, 행정·간호1
		8 급	6	행정1, 사회복지4, 보건1
보 육 정책과	계	3)	19	
	일반직	소 계	19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6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3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7	행정4, 사회복지3
가) 청 소 나) 행정 과	(1) 계	(가)	① 19	
	일반직	소 계	19	
		(1) 4 급	① 1	지방서기관1
		(2) 5 급	① 1	행정·환경1
		(3) 6 급	① 7	행정3, 환경2, 행정·환경2
		(4) 7 급	① 5	행정3, 환경2
	(5)	8 급	① 5	행정3, 환경2
환 경 보건과	(6) 계		① 23	
	(7) 일반직	소계	① 23	
		(8) 5 급	① 1	행정·환경1
		(9) 6 급	① 8	환경3, 행정·환경1, 공업·환경3, 사무운영1

	(10) (11)	7 급 8 급	① 12 ① 2	행정1, 환경10, 공업·환경1 환경1, 공업·환경1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도 시 경관과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행정·시설1
		6 급	4	행정2, 행정·시설2
		7 급	7	행정6, 행정·시설1
		8 급	4	행정3, 행정·시설1
	9 급	2		행정1, 시설1
공 원 녹지과	계		21	
	일반직	소 계	21	
		5 급	1	행정·녹지1
		6 급	6	녹지3, 행정·녹지3
		7 급	8	녹지8
		8 급	5	녹지4, 행정·녹지1
	9 급	1		녹지1
교 통 행정과	계		24	
	일반직	소 계	24	
		5 급	1	행정·시설1
		6 급	5	행정1, 행정·세무1, 행정·시설3
		7 급	12	행정4, 전산1, 시설5, 운전1, 행정·세무1
		8 급	6	행정4, 시설1, 행정·시설1
자 동 차 관리과	계		25	
	일반직	소 계	25	
		5 급	1	행정1
		6 급	5	행정1, 사무운영1, 행정·세무2, 행정·공업1
		7 급	7	행정5, 세무1, 행정·공업1
		8 급	9	행정8, 공업·시설1
	9 급	3		행정3
도 시 재생과	계		29	
	일반직	소 계	29	
		4 급	1	지방기술서기관1
		5 급	1	시설1
		6 급	7	시설5, 행정·시설2
	7 급	9		시설8, 행정·시설1

		8 급	9	행정2, 시설6, 사무운영1
		9 급	2	시설2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공 영 개발과	계		11	
	일반직	소 계	11	
		5 급	1	행정·시설1
		6 급	4	시설2, 행정·공업1, 시설·해양수산1
		7 급	3	행정·시설2, 공업·시설1
		8 급	1	시설1
		9 급	2	시설1, 행정·녹지1
건설과	계		26	
	일반직	소 계	26	
		5 급	1	시설1
		6 급	6	시설3, 사무운영1, 행정·시설1, 공업·시설1
		7 급	10	행정1, 시설6, 운전1, 기계운영1, 행정·공업1
		8 급	6	공업2, 시설3, 행정·공업1
		9 급	3	행정1, 시설2
방 재 하수과	계		14	
	일반직	소 계	14	
		5 급	1	행정 · 시설1
		6 급	3	공업1, 시설1, 행정·시설1
		7 급	4	공업1 , 시설3
		8 급	4	공업2 , 시설2
		9 급	2	행정1, 시설1
건축과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시설1
		6 급	5	시설4, 행정·시설1
		7 급	6	행정1, 시설5
		8 급	5	행정1, 시설4
		9 급	1	시설1
공 동 주택과	계		15	
	일반직	소 계	15	
		5 급	1	행정·시설1
		6 급	4	행정1 , 시설1, 행정·시설1, 사회복지·시설1
		7 급	4	사회복지1, 시설3
		8 급	4	사회복지1, 시설3

9 급 2 행정2

【별표 3】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②	128	
보 건 행정과	계		37	
	일반직	소 계	37	
		4 급	1	지방기술서기관1
		5 급	3	의무2, 행정·보건·간호1
		6 급	8	운전1, 행정·보건1, 보건·의료기술2, 보건·간호2, 의료기술·간호2
		7 급	17	보건·의료기술4, 보건·간호7 , 의료기술·간호5, 간호조무1
		8 급	6	보건1 , 의료기술1, 간호1 , 운전1, 보건·의료기술1, 행정·보건·간호1
		9 급	2	보건1, 의료기술1
건 강 증진과	계		35	
	일반직	소 계	35	
		5 급	3	의무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1
		6 급	4	보건·간호2, 의료기술·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7 급	12	의료기술1, 간호8, 보건·간호3
		8 급	16	보건2, 간호13, 보건·의료기술·간호1
치매정신 건강과	계		25	
	일반직	소 계	25	
		5 급	1	의무·보건·의료기술·간호1
		6 급	4	보건·간호3, 보건·의료기술·간호1
		7 급	7	간호4, 보건·간호3
		8 급	11	간호9, 의료기술2
		9 급	2	사회복지1, 보건1
식 품 위생과	계		21	
	일반직	소 계	21	
		5 급	1	행정·보건1
		6 급	4	보건2, 행정·보건2
		7 급	6	보건6
		8 급	10	보건10
간석건강 생활지원	다) 계		(1) 10	
	일반직	소 계	10	

센터				
		5	급	1
		6	급	3
		7	급	3
		8	급	3
				보건·간호1
				보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2
				보건1, 보건·간호2
				의료기술1, 간호1, 보건·간호1

【별표 5】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제6항 관련)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라) 합 계	(1)		357	
구월1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행정1
		6 급	5	행정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6	행정3, 사회복지3
		9 급	1	행정1
구월2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행정1
		6 급	5	행정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6	행정2, 사회복지3, 사무운영1
		9 급	1	행정1
구월3동	계		19	
	일반직	소 계	19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6	행정4, 사회복지2
		8 급	6	행정2, 사회복지3, 운전1
		9 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구월4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7 급	7	행정3, 사회복지3, 사무운영1
		8 급	4	행정1, 사회복지2, 운전1
		9 급	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간석1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①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6	행정1, 사회복지3, 운전1, 사무운영1
간석2동	계		16	
	일반직	소 계	16	
		5 급	1	행정 · 보건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6	행정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8 급	4	행정2, 사회복지2
간석3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행정 · 사회복지1
		6 급	4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6	행정3, 사회복지3
간석4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6	행정2, 사회복지2, 운전1, 행정·사회복지1
만수1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6	행정3, 사회복지2, 운전1
		8 급	5	행정2, 사회복지3
		9 급	2	사회복지2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만수2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 급	1	행정·시설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7	행정3, 사회복지3, 운전1
		8 급	4	행정2, 사회복지2
		9 급	1	행정1
만수3동	계		16	
	일반직	소 계	16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6	행정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8 급	4	행정1, 사회복지2, 사무운영1
		9 급	1	행정1
만수4동	계		16	
	일반직	소 계	16	
		②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2,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5	행정3, 사회복지2
		9 급	1	행정1
만수5동	계		16	
	일반직	소 계	16	
		③ 5 급	1	행정·시설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6	행정3, 사회복지3
		8 급	4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9 급	1	행정1
만수6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7	

		④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7	행정4, 사회복지3
		8 급	4	행정2, 사회복지2
		9 급	1	행정1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장수 서창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7	
		⑤ 5 급	1	행정·복지1
		6 급	5	행정3,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1
		7 급	6	행정3, 사회복지3
		8 급	4	행정3, 사회복지1
		9 급	1	행정·사회복지1
서창2동	계		20	
	일반직	소 계	20	
		⑥ 5 급	1	행정1
		6 급	5	행정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7	행정3, 사회복지4
		9 급	2	행정1, 사회복지1
남도림 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행정·시설1
		6 급	5	행정4, 행정·사회복지1
		7 급	6	행정2, 사회복지3, 전화상담운영1
		8 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9 급	1	사회복지1
논현1동	계		20	
	일반직	소 계	20	
		⑦ 5 급	1	행정1
		6 급	5	행정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6	행정3, 사회복지2, 운전1
		8 급	6	행정3, 사회복지3
		9 급	2	행정1, 사회복지1
논현2동	계		20	
	일반직	소 계	20	
		⑧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5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7 급	6	행정3, 사회복지2, 운전1
		8 급	6	행정3, 사회복지3
		9 급	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논현 고잔동	계		20	

일반직	소 계		20	
	5	급	1	행정·공업·환경 1
	6	급	5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7	급	7	행정3, 사회복지3, 운전1
	8	급	5	행정2, 사회복지3
	9	급	2	행정1, 사회복지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및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 후속 조치로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정」 별표에 규정된 본청, 직속기관, 각 동별 공무원의 직렬·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표 1] 구 본청 주요 조정 현황
 - 신규 행정수요 정원확보 및 인력 보강 등 ⇒ 23명 증원
- [별표 3] 직속기관(보건소) 주요 조정 현황
 - 감염병 대응 인력 보강 등 ⇒ 7명 증원
- [별표 5] 동 주요 조정 현황
 - 동별 정원 조정 : 동정원 (6명 감원) → 4개 부서 (6명 증원)

훈 령

남동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12월 29일

남동구 훈령 제382호

남동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남동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직근로자 정수표(제7조제3항 관련)

1. 공무직 정수

부 서 별		계	행 정 보조원	단 순 노무원	환 경 미화원
총 계		261	60	61	140
본청 소계		218	38	40	140
대변인		1		1	
일자리정책과		4	4		
총무과		1	1		
평생교육과		4	4		
민원봉사과		2	2		
생활경제과		2		2	
복지정책과		6	6		
사회보장과		4	4		
여성가족과		1	1		
아동복지과		4	4		
보육정책과		1	1		
청소행정과		140			140
환경보전과		3	1	2	
도시경관과		9	1	8	
공원녹지과		4		4	
교통행정과		8	7	1	
도시재생과		2		2	
건 설 과		9	1	8	
방재하수과		13	1	12	
직속기관 소계		25	22	3	
보건소	보건행정과	5	2	3	
	건강증진과	12	12		
	치매정신건강과	5	5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3	3		
사업소 소계		1		1	
남동산단지원사업소		1		1	
동 소계		17		17	

구월1동	1		1	
구월2동	0		0	
구월3동	1		1	
구월4동	1		1	
간석1동	1		1	
간석2동	1		1	
간석3동	1		1	
간석4동	1		1	
만수1동	1		1	
만수2동	0		0	
만수3동	1		1	
만수4동	1		1	
만수5동	1		1	
만수6동	1		1	
장수서창동	1		1	
서창2동	1		1	
남촌도림동	1		1	
논현1동	0		0	
논현2동	1		1	
논현고잔동	1		1	

2. 청원경찰의 정수

부 서 별	합 계	경비청원경찰	기 타
총 계	21	21	
본청 소계	21	21	
총 무 과	21	2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직무성격, 업무량을 고려한 부서(동)별 인력재배치와 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표] 공무원근로자 정수표
 - 총 정수 292 → 282(감10) : 퇴직 8, 현행화 2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2485호

장수1지구, 도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장수1지구, 도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남 동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20년 12월 28일 ~ 2021년 1월 27일
- 공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 공고의 내용

1. 사 업 명	장수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도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지구위치	남동구 장수동 355-3번지 일원 (109필지/31,810㎡)	남동구 도림동 20번지 일원 (259필지/115,056㎡)
3. 사업시행자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4. 사 업 기 간	2021. 1. ~ 2022. 1.	2021. 1. ~ 2022. 1.
5. 사 업 예 산	26,341천원	62,333천원
6.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 관계서류 :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지번별조서 등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7. 의견제출 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인천 남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61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 문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 전 화 : 032-453-6154~5	

	○ 팩 스 : 032-453-2479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우) 21589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사 업 명	「장수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② 사 업 지 구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55-3번지 일원		
③ 시 행 자	남동구청장		
④ 의 건 제 출 자	성명 및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⑤ 의 건 내 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의견서작성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	접수	→	검토	→	처리결과요약	→	지구지정신청
처리기관 : 시·군·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사업명	「도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② 사업지구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0번지 일원		
③ 시행자	남동구청장		
④ 의견제출자	성명 및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⑤ 의견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의견서작성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	접수	→	검토	→	처리결과요약	→	지구지정신청
처리기관 : 시·군·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2488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리 구 수거환경에 적합한 안전기준 적용 및 명문화 필요
- 종량제 봉투의 과도한 중량으로 인한 환경미화원(수거원)의 근골격계 관련 질환 예방 및 생활폐기물 수거 효율화 제고

2.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 규정 마련
- 일반용 종량제 봉투 100리터 제작중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청소행정과

○ 연 락 처 : 전화 453-2553 FAX 453-2559

4. 참고사항

○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년 12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리 구 수거환경에 적합한 안전기준 적용 및 명문화 필요
- 종량제봉투의 과도한 중량으로 인한 환경미화원(수거원)의 근골격계 관련 질환 예방 및 생활폐기물 수거 효율화 제고

☐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규정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 일반용 종량제봉투 100리터 제작중단 반영(안 별표 5)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고려하여 오전4시부터 오전6시 사이에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 수거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별표 5의 “2025년”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
고 특수규격봉투의 가격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공급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2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 거리,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고려하여 오전4시부터 오전6시 사이에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 수거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별표 5]

종량제 봉투의 규격 · 용도 및 연도별 가격(제14조제6항 관련)

구분	2020~2024년	2025년 1월 1일부터	용도
5ℓ	210	230	일반용 봉투
10ℓ	390	440	일반용 봉투
10ℓ	390	440	재사용 봉투
20ℓ	750	870	일반용 봉투
20ℓ	750	870	재사용 봉투
50ℓ	1,850	2,170	일반용 봉투
30ℓ	2,350	2,350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
60ℓ	4,700	4,700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
(15kg)			
125ℓ	7,870	7,870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
(32kg)			
50ℓ (13kg)	5,500	5,500	불연성 폐기물 마대
50ℓ			공공용 봉투
100ℓ			공공용 봉투

비고 : 불연성폐기물 마대의 가격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9. 4. 16.]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9. 12. 31.]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19. 4. 8.)

가. 종량제봉투 종류·재질·규격 등에 관한 사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며, 이외에 처리방법에 따라 매립용(불연성), 소각용(가연성) 봉투로도 구분·제작 가능
 - 일반용 봉투 용량: 1L, 2L, 3L, 5L, 10L, 20L, 30L, 50L, 75L, 100L
 - 재사용 종량제봉투: 3L, 5L, 10L, 20L, 30L
 - 공공용 봉투 용량: 30L, 50L, 100L
 -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 용량: 3L, 5L
- 일반용 봉투는 발생원을 고려, “생활폐기물용”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으로 구분하여 제작·공급 가능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2489호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구청사 인근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구청사 부설주차장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요금징수 및 운영시간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구청사 부설주차장과 구청사 인근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통합하여 관리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다. 기타사항
- 라.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총무과
- 연 락 처 : 전화 453-2185 FAX 453-2189
- 마.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개정 규칙(안) : 별첨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년 12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구청사 인근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구청사 부설주차장과 통합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요금징수 및 운영시간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함

□ 주요내용

-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정의 및 적용범위(제1조, 제2조)
- 구청사 부설주차장과 구청사 인근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통합하여 관리(제3조제2항)
- 주차장 범위(부설주차장→부설, 노외, 노상 주차장)확대를 위해 문구 개정(제3조제1항 등)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을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남동구 공공청사 등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남동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을 위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청사 등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 및 주차장(이하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청사”를 “청사 부설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남동구청 청사 부설주차장에 인접한 공공시설의 주차장

3. 남동구 평생학습관 부설주차장

제3조제1항 중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제3항에 따라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주차장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부설주차장” 을 각각 “주차장”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부설주차장” 을 각각 “주차장”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부설주차장” 을 각각 “주차장”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부설주차장” 을 “주차장”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단서 및 제4항 중 “부설주차장” 을 각각 “주차장” 으로 한다.

제10조 중 “부설주차장” 을 “주차장” 으로 한다.

제12조 중 “부설주차장” 을 “주차장”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부설주차장” 을 각각 “주차장” 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중 “부설주차장” 을 각각 “주차장” 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부설주차장” 을 각각 “주차장”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부설주차장” 을 각각 “주차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u>남동구 공공청사 등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공공청사 등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남동구청 청사 <u><신 설></u> 2. 남동구 평생학습관 제3조(주차장 관리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 각 호의 <u>부설주차장에 대하여</u> 각각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u><신 설></u>	<u>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관리 규칙</u> 제1조(목적) ----- ----- --- <u>남동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을 위해 사용하는 주차장</u>----- -----. 제2조(적용범위) ----- --- <u>부설주차장 및 주차장(이하 “주차장”</u>----- -----. 1. ----- <u>청사 부설주차장</u> 2. <u>남동구청 청사 부설주차장에 인접한 공공시설의 주차장</u> 3. <u>남동구 평생학습관 부설주차장</u> 제3조(주차장 관리 등) ① ----- ----- ----- <u>주차장</u>----- ----- -----. ② <u>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u>

② 부설주차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 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주차요금 징수 및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등) ① 부설주차장은 24시간(지하주차장의 경우는 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한다) 운영하되,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로 운영할 경우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및 교통 혼잡 등 분

리를 위해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주차장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주차장-----

-----.

④ 제3항에 따라 주차장 -----

-----.

⑤ ----- 주차장-----

-----.

⑥ -----
----- 주차장-----
----- 주차장-----
-----.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등) ① 주차장-----

-----.

② -----

-----.
----- 주

설주차장 여건에 따라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대규모 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징수대상 등) ①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경우 주차요금 징수대상은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로써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 11. (생략)

②·③ (생략)

제6조(주차요금) ① 자동차가 부설주차장에 들어온 최초 1시간은 무료로 하고, 무료시간이 경과한 최초 30분은 기본요금 600원을 징수하며, 그 후 매 15분마다 3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5시간 이상 주차 시에는 1일 주차로 보아 주차요금은 6,000원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수요 및 교통 혼

차장----- 주차장-----

-----.

③ -----

주차장-----.

-----.

제5조(주차요금 징수대상 등) ① 주

차장-----

----- 주차장
-----.

1. ~ 1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주차요금) ① ----- 주차장

-----.

② -----

잡 등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라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월 정기자동차의 등록 등) ① (생략)

② 월 정기자동차의 1개월 주차요금은 20,000원으로 한다. 다만, 주차공간 부족 등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라 정기자동차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 관리자는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주차시간을 자동 인식하는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요금을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한다.

② (생략)

③ 월 정기주차 요금은 정기주차 신청을 접수할 때에 징수하고, 유효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대한 주차요금을 환불

--- 주차장 -----

-----.

제7조(월 정기자동차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주차장 -----

-----.

제9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 ---

----- 주차장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주차장 -----

주차장 -----

한다.

④ 정기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 중 부제에 참여하는 자동차가 운휴일에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이외의 관리) 주차요금 징수시간 이후 부설주차장을 출입하는 자동차는 다음 날 주차요금 징수시간 전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않고, 징수시간 중 주차한 시간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12조(방치자동차에 대한 조치) 관리책임자는 부설주차장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96시간 이상 장기 주차된 자동차가 있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강제처리를 관계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①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에 주차하

-----.

④ -----

- 주차장-----

-----.

제10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이외의 관리) ----- 주차장-----

제12조(방치자동차에 대한 조치) ----- 주차장-----

제13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① ----- 주차장-----

-----.

② ----- 주차장-----

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부설주차장에서 증명할 수 없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주차장법」 제17조제3항을 따른다.

제14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부설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2. 부설주차장에 출입하는 자동차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

제15조(주차의 제한 등) ① (생략)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부설주차장 질서를 어지럽힐 때
3. 자동차를 이용해 부설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4.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파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5. (생략)

-----.

③ 주차장-----

-----.

제14조(이용자 준수사항) -----
-----.

1. 주차장-----

2. 주차장-----

제15조(주차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주차장 -----

2. ----- 주차장 -----

3. ----- 주차장 -----

4. 주차장-----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부설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를 주차하려고 할 때

제16조(감독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수탁자에게 부설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 주차장 -----

제16조(감독 등) ① -----
-- 주차장-----

주차장-----
-----.

② -----
----- 주차장 -----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

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공공시설 등의 주차장 사용료 징수 및 운영 관리) ① 구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으로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그 밖에 주차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2491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등의 수수료 징수방법 및 반환 규정을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하고,
- 코로나 19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재난·재해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 재정지원 방안으로 옥외광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수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안 제31조제2항)
-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면제 근거 조항 신설(안 제31조제3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1. 18.(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남동구청장(참조 : 도시경관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보낼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도시경관과

○ 연 락 처 : ☎ 453-2282, FAX 453-283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자료

- 일부개정 조례안 : 별첨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 이유

-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등의 수수료 징수방법 및 반환 규정을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하고,
- 코로나 19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재난·재해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 재정지원 방안으로 옥외광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수수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안 제31조제2항)
-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면제 근거 조항 신설(안 제31조제3항제5호)

4)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와 반환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llegible]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삭제>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자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2493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20.12.29. ~ 2021.1.12.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67루4847외 10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

일련 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 명	성 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주 소	보관장소 /보관일	압류(저당)권설정내역
2020-00410	인천남동카9988	이룬차	김*희 /79****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로 5**, **20호(논*동, 푸****티)	(주)인천 폐차사업소 /2020.10.12.	해당없음
2020-00415	인천33두9631	엑스트렉	유*식 /70****	경기도 양평군 용*면 하**길 1*	(주)서울 폐차사업소 /2020.10.12.	인천 부평구 (환경보전과 교통행정과 세무1과)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 강원 원주시 (교통행정과) 경기 양평군 (환경관리과 세무과 환경과) 양평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 인천 남동구 (세입징수과)
2020-00416	39누2244	투싼(TUCSON)	남*호 /59****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6번길 1*, **5호(간*동)	(주)인천 폐차사업소 /2020.10.12.	인천 남동구 (환경보전과 자동차관리과) BNK캐피탈주식회사
2020-00435	울산32더9470	쏘나타투1.8	함*철 /59****	울산광역시 중구 옥**길 3*-*, */ 3(옥*동)	(주)서울 폐차사업소 /2020.10.8.	LG캐피탈(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울산 남구 (지방세과 교통과) 울산 중구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지방세과 교통과 세무2과) 인천 미추홀구 (교통과) 대전광역시 (교통정책과) 인천 남동구 (교통행정과) 인천시 (교통관리과) 인천남동경찰서 인천지방검찰청
2020-00439	인천80러6525	포터초장축슈퍼랩	권*명 /62****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로 **2, *동 **5호(간*동, 광***트)	기전산업 (주)폐차사업소 /2020.10.7.	인천지방법원 인천 부평구 (주차지도과) 인천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인천남동경찰서
2020-00440	42보7646	세피아오토	문*남 /55****	충청북도 진천군 광**면 장***길 *3, **1호(예**라)	(주)서울 폐차사업소 /2020.10.5.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충북 진천군 (세정과 경제과 경제교통과 일자리경제과) 진천경찰서
2020-00476	12도5188	싼타페(SANTAFE)	(주)명**트	경기도 안산시 단*구 이**길 * (고*동)	기전산업 (주)폐차사업소 /2020.10.21.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 경기 안산 단원구 (세무과 세무2과) 경기 안산 (환경정책과 차량등록사업소) 인천 연수구 (차량민원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제1583호

남동구 구보

2020. 12.. 31. 목요일

					안산단원경찰서 경기 광명시 (지도민원과) 서울 서초구 (주차관리과) 인천 미추홀구 (자동차관리과)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2494호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남 동 구 청 장**1.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규제의 공백 또는 법령 해석의 모호성을 최소화 하고자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규격(1L) 추가
-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 (안 제2조제1항제3호)
- 상위법령의 서식에 관한 인용규정을 정비함 : (안 제16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을 위한 지도·점검 주기를 반기에서 1년으로 변경함 : (안 제17조)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규격(1L) 추가 : (별표 3)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안 제1조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청소행정과

○ 연 락 처 : 전화 453-8493 FAX 453-2559

4. 참고사항

○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년 12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규제의 공백 또는 법령 해석의 모호성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규격(1L) 추가

□ 주요내용

-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 (안 제2조제1항제3호)
- 상위법령의 서식에 관한 인용규정을 정비함 : (안 제16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을 위한 지도·점검 주기를 반기에서 1년으로 변경함 : (안 제17조)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규격(1L) 추가 : (별표 3)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안 제1조 등)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생된”을 “발생한”으로 한다.

제2조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음식물 등”을 “음식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점과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 전문점은 제외한다.

제3조 중 “관하여 적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를 “다량배출사업자”로, “위한”을 “위하여 시행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위한”을 “위하여 시행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조제3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를 “다량배출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이 경우”로, “신고 제출”을 “제출”로, “에”를 “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을 “다량배출사업자는”으로, “발생억제방법은”을 “발생 억제를 위하여”로, “호와 같다”를 “호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자”로, “대해 보완”을 “대하여 보완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자원화”를 “재활용”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단서조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량배출사업자”로 한다.

제12조4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을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을 “다량배출사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를 “다량배출사업자”로,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법 제 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다량배출사업장은”을 “다량배출사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을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으로, “발효건조에 의하여”를 “발효건조나”로, “소멸화하여”를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발생된”을 “발생한”으로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제2조제3호”를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시행규칙”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 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으로, “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 4서식 변경신고서”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소재지를 변경한”을 “소재지가 변경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 서식 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3서식”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기별로”를 “연”으로 한다.

제22조(준용규정)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가격 및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제9조제3항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가격

구 분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판매 가격	100원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2,000원
판매 수수료	7원	14원	22원	36원	72원	144원
봉투규격 (가로-세로,cm)	15×17	19×22.9	22×26	26×31	33×40	41×49

※ 판매수수료(이윤)는 판매가격에 포함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구 분	무게(kg)	부피(ℓ)
공동주택 단위무게 당 수수료	100원	100원

○ 음식물류 폐기물 비중 1.0 적용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발생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다음과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들을 말한다.		1.	-----	

			-----	음식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3.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한다.(다만,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과 일반음식점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 전문점은 제외한다.).

4. ~ 6. (생략)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목의 휴게음식점 중 주로 다
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점과 일
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
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
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
전문점은 제외한다.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

----- 적용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
출사업자-----

위하여 시행하는 -----.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생략)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을 이용할 경우, 먹을 만큼 주문
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
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
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
제를 위한 노력) ①·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를 포
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
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및
포상 할 수 있다.

④ 제2조제3호의 사업장을 운영
하는 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
업자”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
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
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
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
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제7조(주민의 책무) ① (현행과 같
음)

② ----- 다량배
출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 위하여 시
행하는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
제를 위한 노력)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범위-----
-----.

④ 다량배출사업자-----

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

---. 이 경우---

제출---

-----를-----.

⑤ 다량배출사업자는 -----
----- 발생 억제를 위하여
--- 호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
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제5호 또는 제12호) ----

⑥ -----다량배출
사업자-----

----- 대하여 보완을 ---

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부과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⑤ (생략)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② (생략)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 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표 3-----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 및 이물질 을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 에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 출하여야 한다.

2. (생 략)

④ · ⑤ (생 략)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 재질)

① · ② (생 략)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 기는 수거 · 운반이 용이하고 내 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 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 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 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 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 치) ① ~ ③ (생 략)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청결 · 위생관

1. -----
-- 재활용 -----

-----.

2.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 재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량배출사업자----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 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리를 위하여 위탁세척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 및 이물질 을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범위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② 다량배출사업자

법 제13조제1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스스로 재활용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2. 제1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항-----

-----.

1.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2. ----- 다량배출사업자는 -----

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할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
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
정하여야 한다.

3.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
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
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
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
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
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발생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
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
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
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
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15조의
2,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

--. -----

-----.

3. -----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

-- 발효건조나 -----
----- 부속의 방법으
로 처리하여 -----
-----.

4. ----- 발생한-----

-----.

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
항) 다량배출사업자-----

- 다음 -----

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신고

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

2. · 3. (생략)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 · 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로부터 작성하여 2년간 보

-----.

1. -----

-----.

가.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나. -----

시행규칙 -----

2. · 3. (현행과 같음)

4. -----

-----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

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의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
지 제4호의3서식의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변경신고서에 변
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6호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
지를 변경한 경우

나.·다. (생 략)

6. 구청장은 제1호 또는 제5호
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법 시
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또
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6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
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
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
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

----- 시행규칙 별
지 제48호의4서식-----

-----.

5. -----

-----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4
호의11서식-----

-----.

가. ----- 소재
지가 변경된 --

나.·다. (현행과 같음)

6. -----
----- 시행규
칙 별지 제4호의12서식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3서식

-----.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
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

· 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생략)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점검) -----
----- 연 -----

-----.

1.·2. (현행과 같음)

제22조(준용규정) -----

----- 따
른다.

[참고자료]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1., 2012. 2. 22., 2012. 6. 1., 2013. 3. 23., 2013. 8. 13., 2014. 12. 31.>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鳥獸肉類)·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제6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2. 9. 24., 2014. 1. 14., 2014. 12. 31., 2015. 7. 24., 2017. 10. 17.>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흘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5.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0. 분진·소각재·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할 것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12. 폐산·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장치 등을 갖추 것

나.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 제 약품·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 을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11. 9. 7.>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 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 7. 29., 2009. 12. 24., 2011. 9. 7., 2013. 5. 28., 2015. 7. 24., 2016. 1. 19., 2017. 12. 26., 2018. 3. 27.>

1. 폐기물처리업자

2. 삭제 <2011. 9. 7.>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전 자제품 판매업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6. 삭제 <2011. 9. 7.>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6. 30.>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4. 1. 14.]

제3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6. 30.>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4. 1. 1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2501호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함으로써 불필요한 조례 개정사유를 최소화 하고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복무선서, 책임완수 및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안 제4조)
- 근무기강의 확립 및 친절·공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 서류보관, 당직·비상근무, 겸임·파견근무, 복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10조, 안 제12조)
- 경력직·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총무과
 - 연 락 처 : 전화 453-2182, FAX 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1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함으로써 불필요한 조례 개정사유를 최소화 하고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복무선서, 책임완수 및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안 제4조)
- 근무기강의 확립 및 친절·공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 서류보관, 당직·비상근무, 겸임·파견근무, 복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10조, 안 제12조)
- 경력직·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안 제15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및 제30조의4(파견근무), 제47조 (복무 선서), 제59조(위임 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제7조의7(특별휴가)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남동구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남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밖에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④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⑥ 공무원 채용시험(각종 자격증 시험 제외)에 시험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은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반일(0.5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공직자의 행동규범(제5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들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3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5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이 아님

작성자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이 미 영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0.20. 대통령령 제31119호, '20.10.20. 일부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

- 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 · 사산의 경협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9. 12. 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0.>
-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

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0-128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직 권 말 소 일 자 : 2020. 12. 24.
-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 공 고 기 간 : 2020. 12. 24. ~ 2021. 01. 07. (15일간)
-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일
일 반 음식점	2019- 0203521	에브리치킨	강*구	당좌로5번길 46, 1층 일부호 (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08-21	2020-12-24
일 반 음식점	2017- 0199069	연탄공장	문*하	서창남순환로216번길 20, 1층 109호 (서창동, 승연프라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07-01	2020-12-24
일 반 음식점	2019- 0203123	다랑어형님네	백*열	이화로30번길 15, 1층 일부호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12-23	2020-12-24

6. 고 지 사 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6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0-129호

2021년도 방역 소독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에서는 2021년도 방역 소독사업을 수행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채용 분야 및 조건

사 업 분 야	인원(명)	채 용 기 간	비 고
방역소독사업	4	2021.01.13.-06.12	운전가능자 (1종 보통)

※ 고용기간 및 보수는 예산, 사업 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채용 응시 자격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자
- ☐ 1종 보통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자
(※ 남동구 지리에 익숙하며 화물소형트럭 운전경력 우대)

3. 제출 서류

- ☐ 표준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1종 보통)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 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4. 채용방법

- ☐ 1차시험 : 서류전형
- ☐ 2차시험 : 면접시험(최종)

5. 응시원서 접수

-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12. 28(월) ~ 2021. 01. 06.(수)
 - ※ 원서 접수시간 : 09:00부터 17:00까지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직접 접수
 - ※ 제출서류 확인을 위해 본인 직접 접수(단체 접수 및 팩스, 우편 불가)
- ☐ 접수장소 : 남동구보건소 4층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020.12.28.(월) ~ 2021.01.06.(수)	2021.01.08.(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021.01.11.(월) 14:00 남동구청 7층 소강당	2021.01.12.(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7. 근무여건

□ 업무내용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분무소독 및 예방활동
- 주간 분무소독 및 야간 연막소독 등
- 감염병 매개모기 퇴치 유충조사 및 유충구제
- 어린이집 장난감 및 교구재 소독
- 취약지, 복지시설 살균소독 사업
-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 보 수 : 80,960원/일

-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급식수당, 위험수당, 현장근로비, 목욕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급량(간식비), 피복비(작업복 및 안전화) 지급
- 4대 보험 가입(단, 본인부담금은 근로자 부담)

○ 보수지급 : 매월 20일

○ 근로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 (주5일, 1일 8시간)

* 필요시 휴일 및 야간방역을 위하여 근무일자 및 시간별도 조정 가능

○ 복무기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취업규칙』에 의함

○ 고용해지 : 근무 중 미숙하거나 불성실한 태도가 보이는 경우 사용자는 고용자에게 1개월 전에 통보한 후 고용을 해지할 수 있음

8. 응시자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응시자는 모집인원과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채용되지 않은 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에서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일제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채용 대상자 제외)
- ☐ 반환청구되지 않은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180일 이후에는 채용서류 파기됩니다.
- ☐ 채용 후 신원조회, 인사관리, 경력증명, 자격(면허)검증을 위한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보건소 방역사업담당자(032-453-5095)에게 문의바랍니다.

서식 1

표준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표준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필수>

응시(사업)분야	접수번호 :
----------	--------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요 경력사항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1종 보통 (소형화물트럭) 운전 경력사항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자격증 및 특기사항	자격증명	자격취득(예정)일	교부기관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저소득층 여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해당여부		

■ 작성 시 유의사항

1. 주요 경력사항

근 무 처 (부서)	근무기간	근무월수 (월일수)	직위 (급)	주요업무실적
1. 00 기업 (00팀)	20XX.X.X. ~ 20XX.X.XX.	XX개월	대리	

【작성요령】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기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일(0000.00.00)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

③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2.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증명	자격취득(예정)일자	교부기관
1. 00자격증	2009. 3. 28.	XXXXXX
2.		
3.		

※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3. 저소득층 여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해당여부		

【작성요령】

①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로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4. 자기소개서(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

○ 수기로 작성

【작성요령】

① 경력응시자는 응시관련 업무와 관련된 경력사항(직무)를 상세히 기재할 것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남동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모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채용 선발심사	서류 접수일로부터 5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남동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채용되지 않은 서류 중 반환청구되지 않은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후 180일 후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자기소개 및 경력자력면허사항	채용 선발심사	서류 접수일로부터 5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남동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접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보건소 귀중

서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침_별지 제8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기간제근로자 채용	주민등록초본 열람	(인)
	결격사유 유무 조회	(인)

2. 이용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0-130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 권 말 소 일 자 : 2020. 12. 30.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0. 12. 30. ~ 2021. 01. 13.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일
일 반 음식점	1999- 0199146	옛날주물럭집	박*기	인주대로618번길 3(구월동, 지하1층, 1층, 2층, 3층)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11-30	2020-12-30

6. 고 지 사 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032)453-2626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21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소래5호선, 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소래5호선, 공공공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48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 명칭: 소로2-소래5호선 개설 및 공공공지 설치 공사

3. 사업규모(변경 없음)

- 소래5호선(2단계 구간): L=총 100m 중 54.90m, B=8m, A=449.0㎡
- 공공공지: A=180.0㎡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 지정

- 성명: (주)코리아신탁 대표 최익중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 변경

- 성명: (주)아시아신탁 대표 배일규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2020. 6. 4. ~ 2023.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소로2-소래5호선 편입토지조서(변경)

순번	행정리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유자		
1	논현동	111-485	대	231	231	-	코리아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10층 (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1-1	논현동	111-485	대	231	231	-	아시아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변경
2	논현동	111-486	대	218	218	-	코리아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10층 (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2-1	논현동	111-486	대	218	218	-	아시아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10층 (대치동, 해성2빌딩)	변경
합 계				449	449	-			

○ 공공공지 편입토지조서(변경 없음)

순번	행정리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유자	
1	논현동	66-19	도	2,065	26	2,039	인천시남동구	
2	논현동	111-6	도	2,866	46	2,820	인천광역시	
3	논현동	111-15	도	102	39	63	국(건설부)	
4	논현동	111-275	도	567	69	498	인천시남동구	
합 계				5,600	180	5,420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215호

도시계획시설(시장: 소래어시장)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시장: 소래어시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공영개발과 ☎032-453-8502, 도시재생과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6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시장)
- 명칭: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

3. 사업규모(변경 없음)

- A=4,303㎡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 기정

- 성명: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협동조합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13, 3층(논현동)

○ 변경

- 성명: 남동구청장(공영개발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 성명: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협동조합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13, 3층(논현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2019.04.05. ~ 2020.12.31.

○ 변경: 2019.04.05. ~ 2021.0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토 지 소 재 지			면적(㎡)		소 유 자		비고 (최초 결정일)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총 계			5,118	4,303			
1	논현동 111-168	잡	4,030	4,013	남동구		남고2019-3호 (2019.02.01.)
2	논현동 111-199	도	888	90	국토교통부		
3	논현동 111-462	잡	200	200	남동구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216호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남 동 구 청 장**I . 2021년도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결정****1. 결정항목**

가. 건물신축가액기준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금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 ①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 ②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 ③ 경과연수별 잔가율
- ④ 가감산특례(가산대상 및 가산율, 감산대상 및 감산율)
- ⑤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부록>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

남동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물시가표준액표와 같음

Ⅱ. 202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80,175종)

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시가표준액 ④과표적용요령 ⑤산출예시

나. 기계장비(12,874종)

①정의 ②종류 ③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시가표준액
⑤적용요령 ⑥산출예시

다. 선박(140종)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내용년수 및 감가율
④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⑤시가표준액 적용요령

라. 항공기(244종)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표 ⑤ 적용방법

마. 시설물(5,914종)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2,354종)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사. 입목(97종)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가조사방법 ⑤적용요령 ⑥시가표준액

아. 어업권(군·구별 개별고시)(235종)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적용요령 ④산출예시 ⑤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

자. 광업권(군·구별 개별고시)

①용어정의 ②대상 ③용어해설 ④적용요령

차.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군·구별 개별고시)

①용어정리 ②종류 ③시가표준액표

카. 지하자원(군·구별 개별고시)

①용어정리 ②지하자원의 대상 ③용어해석 ④시가표준액

2. 세부결정사항

남동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21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11 외 4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40 (간석동)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0-1, 100-5, 100-6, 100-10, 100-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40 (간석동)	2009.11.16.	행정구역명(간석동)을 이용하여 간석로로 제명	2020.12.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간석로 40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40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72, 1-17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20 (만수동)	2009.11.16.	행정구역명(만수동)을 이용하여 만수로로 제명	2020.12.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수로 120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20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41-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65번길 12-11 (구월동)	2009.11.16.	구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0.12.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로265번길 12-1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2-11을 건물번호로 부여	센트럴시티 그랑베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08-157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40-6 (간석동)	2009.11.16.	문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0.12.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문화로169번길 40-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40-6을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52번길 9 (간석동)	2009.11.16.	용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0.12.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용천로152번길 9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9를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40 (간석동)	2020.12.28.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20 (만수동)	2020.12.28.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18 (만수동)	2020.12.28.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42번길 4 (간석동)	2020.12.28.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42번길 6 (간석동)	2020.12.28.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65번길 12-3 (구월동)	2020.12.28.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360번길 32 (간석동)	2020.12.28.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360번길 30 (간석동)	2020.12.28.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폐지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22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1. 신청인

- 가. 성 명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2. 공사내용

- 가. 공 사 명 :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대교 공유수면

3. 착수예정인 및 준공예정일(공사기간)

- 당 초 : 착공일로부터 2020. 12. 31.
- 변 경 : 착공일로부터 2022. 12. 31.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실시계획 승인일

- 가. 면 적 : 1,789m² (직접 134m², 간접 1,655m²)
※ 일시점용 A=228m²
나. 실시계획변경 승인일 : 2020. 12. 29.

5. 기타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사항 문의는 남동구청 공영개발과(☎032-453-85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22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550 (논현동)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550 (논현동)	2009.7.6.	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암도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20.12.2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아암대로 1550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550을 건물번호로 부여	새우타워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548 (논현동)	2009.7.6.	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암도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20.12.2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아암대로 154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548을 건물번호로 부여	커뮤니티 공간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2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1-6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1-67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고잔동 소1-67호선 확·포장공사

3. 사업규모(변경)

- 기정: L=114m, B=3m, A=380.5㎡
- 변경
 - 1구간: L=114m 중 38m, B=3m, A=176.8㎡
 - 2구간: L=114m 중 73m, B=3m, A=203.7㎡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주식회사 디에이치산업개발 대표 정성훈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132번길 9, 비동 3919호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2019.09.30 ~ 2020.12.31.
- 변경: 2019.09.30 ~ 2021.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1	고잔동 761	잡	1,336	380.5	성명	주소	성 명	주소	권리관 계	
					남동구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소 계			1,336	380.5						